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9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3874 재산세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
원 고	[redacted] 주식회사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6. 7. 22.
판 결 선 고	2016. 9.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14.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재산세 458,291,430원, 지방교육세 91,658,28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청구취지에 '재산세 549,949,710원'의 취소를 구한다고 기재하였으나, 갑 제15호증 납세고지서의 기재에 의하면 오기임이 분명하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9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2. 18. [redacted]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07. 12. 13. [redacted] 구성원들이 한국철도공사와 체결한 사업협약상의 지위를 인수한 뒤, 1차로 2007. 12. 27.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957 철도용지 18,494.5㎡(지상에 대한민국 소유의 서울우편집중국 건물 1동이 있다. 이하 '우편집중국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차로 2008. 3. 31.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1028 철도용지 89,123.7㎡(지상에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차량정비단이 사용하던 건축물들이 있었다. 2008. 5. 26. 위 토지로부터 같은 동 40-1030, 1031, 1032, 1033, 1034의 5개 필지가 분할되었다. 이하 토지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위 89,123.7㎡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8. 6.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당초 2009. 9. 15. 원고에게, 원고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9. 6. 1. 현재 소유한 우편집중국 토지 및 이 사건 토지 합계 107,618.2㎡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 3,431,472,95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피고는 [redacted]시가 2012. 7.경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원고가 2009. 6. 1. 현재 소유한 이 사건 토지 및 원고가 그 후 2011년경까지 추가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양수한 토지 합계 337,997.3㎡(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한다)는 전체가 철도시설에 공여되어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이고,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시가표준액 합계는 2,484,280,155,000원, 이 사건 전체 토지 지상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합계는 67,793,680,754원으로,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9

상 토지가 아니다.'는 이유로, 2013. 5. 14.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계산한 2009년 귀속 재산세 458,291,430원, 지방교육세 91,658,280원을 추가로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3. 8. 9.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11. 7.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4. 1.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11. 기각결정을 받았다(원고는 심판청구 기각결정문을 2014. 12. 15. 수령하고 2015. 3.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5. 3. 14.는 토요일, 2015. 3. 15.은 일요일이어서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5, 28 내지 33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 지상 건축물은 철도차량의 개조, 개량, 재생활동에 사용된 공장용 건축물이다. 이 사건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이용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작으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별도합산 과세대상이다.

2) 설령 이 사건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근거 없이 이 사건 전체 토지가 그 지상 건축물들의 부속토지라고 전제한 후, 지상 건축물들의 시가표준액이 이 사건 전체 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각 지상 건축물의 구체적인 용도와 기능이 다르므로 피고와 같이 전체적으로 토지와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9

비교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 지상 건축물이 지방세법상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지방세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82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위 지방세법 규정에 근거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1조의2 제1항 제1호는 '특별시지역 · 광역시지역 및 시지역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제132조 제1항 제1호는 '읍 · 면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각 규정하고, 제131조 제2항은 '제131조의2 및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0. 12. 23. 행정안전부령 제1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2조는 '영 제1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 가공 · 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9

나) 시행규칙 제72조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물품의 제조나 가공을 수반하지 않고 정비 등 수선의 목적에만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제조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9390 판결 참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13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공장용 건축물'은 그 의미를 규정한 시행령 제131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72조 규정을 공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고, 단지 그 소재 지역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될 뿐이며,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의 범위 내에서 별도합산과세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에서 분리과세한다는 의미이다.

시행규칙 제74조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시행규칙 [별표 4]의 2. 나.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을 이용하여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구 공장입지기준고시(2008. 7. 4.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86호, 이하 '고시'라 한다) 제2조는 '이 기준을 적용받는 공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1]은 산업집적법 제2조 제1호에서 공장의 요건으로 든 '제조업'에 속하는 업종에 관해서만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공장용 건축물'에 '제조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면 분리과세되는 면적을 산출할 수 없는 결과가 되므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9

위 '공장용 건축물'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공장용 건축물'의 의미는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공장용 건축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해석은 시행규칙 제72조가 '제조시설용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다) 산업집적법 제2조 제1호는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산업집적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표준산업분류(총설) 3. 바. 1)은 '생산단위의 산업활동은 일반적으로 주된 산업활동, 부차적 산업활동 및 보조적 활동이 결합되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주된 산업활동이란 산업활동이 복합 형태로 이루어질 경우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중에서 부가가치(액)가 가장 큰 활동을 말하며 부차적 산업활동은 주된 산업활동 이외의 재화생산 및 서비스제공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주된 활동과 부차 활동은 보조활동의 지원 없이는 수행될 수 없으며 보조 활동에는 회계, 창고, 운송, 구매, 판매촉진, 수리서비스업 등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3. 바. 2) 가)는 '생산단위의 산업활동은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 활동(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의 주된 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노선 또는 정기 운송 여부를 불문하고 철도, 도로, 파이프라인, 해상 및 항공 등으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하는 운송업이지, 철도차량의 일상적 유지 및 수리활동을 영위하는 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9

송관련 서비스업이나, 철도의 개량, 재생 및 개조활동을 영위하는 기타 운송장비제조업이 아니다. 한국철도공사가 이 사건 토지 지상 건축물에서 일부 철도차량의 개량, 재생 및 개조활동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보조적 활동에 불과하여 위 건축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한국철도공사가 이 사건 토지 지상 건축물에서 철도차량의 일상적 유지 및 수리활동을 한 경우, 위 건축물은 물품의 제조나 가공을 수반하지 않고 정비 등 수선의 목적에만 사용된 것이므로 시행규칙 제72조에서 말하는 '제조시설용 건축물'이 아니다.

라)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지상 건축물은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1호의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의 적용 여부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될 수 있는 반면, 1필지의 토지라도 그 일부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3312 판결).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축조된 건축물들은 모두 철도차량의 정비, 개량, 개조 및 유지보수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 시설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9

고, 원고가 제출한 용산 국제업무지구 사업대상지 현황도상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원고와 한국철도공사가 사업대상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을 제2호증에도 용도란에 '철도정비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원래 한국철도공사가 하나의 필지로 소유하던 것인데, 원고에게 양도되면서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전체적으로 그 지상에 축조된 여러 동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요건의 판단을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 지상 건축물들의 시가표준액 합계와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합계를 비교함이 옳다.

이에 따라 보건대, 이 사건 토지 지상 건축물의 내역과 그 시가표준액 합계액은 별지 시가표준액 비교표 기재와 같이 17,885,205,300원이고(원고와 한국철도공사 사이에 작성된 갑 제7호증의 2에 기재된 건축물 내역을 기초로 산정한 것이다),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합계액은 별지 시가표준액 비교표 기재와 같이 655,059,195,000원(㎡당 공시지가 7,350,000원)이므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2.73%로 100분의 3에 미달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별도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9

재판장 판사 호제훈

판사 이민구

판사 이정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9

별지

시가표준액 비교표

건물명	용도코드명	구조코드명	연면적	층수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신축가액	구조*용도*위치 *신축가액(1,000원절사)	면적적	가감산율	2009신축가액(시가표준액)
화사공장	(정비)공장	철골조	5326.99	1	100	80	125	510000	510,000	5326.99	100	2,716,764,900
E1회전기장	(정비)공장	철골조	1738.00	1	100	80	125	510000	510,000	1738.00	100	886,380,000
화자공장화장실	(정비)공장	시멘트벽돌조	20.03	1	80	80	125	510000	408,000	20.03	100	8,172,240
청경내무반	(정비)공장	시멘트블럭조	132.00	1	60	80	125	510000	306,000	132.00	100	40,392,000
봉공작업장	(정비)공장	시멘트블럭조	559.60	1	60	80	125	510000	306,000	559.60	100	171,237,600
론 장	(정비)공장	철근콘크리트조	1359.87	3	100	80	125	510000	510,000	1359.87	100	693,533,700
객차차체공장	(정비)공장	철근콘크리트조	2613.60	1	100	80	125	510000	510,000	2613.60	100	1,332,936,000
객차차체공장	(정비)공장	철골조	2069.99	2	100	80	125	510000	510,000	2069.99	100	1,055,694,900
건조보일러	(정비)공장	시멘트벽돌조	353.22	1	80	80	125	510000	408,000	353.22	100	144,113,760
EC차체장	(정비)공장	철골조	4883.77	2	100	80	125	510000	510,000	4883.77	100	2,490,722,700
객사대체작업장	(정비)공장	철골조	3526.21	1	100	80	125	510000	510,000	3526.21	100	1,798,367,100
입출검사장	(정비)공장	철골조	946.58	1	100	80	125	510000	510,000	946.58	100	482,755,800
객차상하체장	(정비)공장	철골조	755.24	1	100	80	125	510000	510,000	755.24	100	385,172,400
차륜장	(정비)공장	철골조	3183.47	1	100	80	125	510000	510,000	3183.47	100	1,623,569,700
EC회전기장	(정비)공장	철골조	1115.67	1	100	80	125	510000	510,000	1115.67	100	568,991,700
등문정비실	(정비)공장	시멘트벽돌조	31.54	1	80	80	125	510000	408,000	31.54	100	12,868,320
제2목장	(정비)공장	철근콘크리트조	1190.00	1	100	80	125	510000	510,000	1190.00	100	606,900,000
소형회전기장	(정비)공장	철골조	420.99	1	100	80	125	510000	510,000	420.99	100	214,704,900
객차주행시험실	(정비)공장	철파이프조	77.98	1	80	80	125	510000	408,000	77.98	100	31,815,840
입환대기실	(정비)공장	시멘트블럭조	120.00	1	60	80	125	510000	306,000	120.00	100	36,720,000
정문경비실	(정비)공장	시멘트벽돌조	22.48	1	80	80	125	510000	408,000	22.48	100	9,171,840
화차밸크고압세차장	(정비)공장	조립식 패널조	600.00	1	50	80	125	510000	255,000	600.00	100	153,000,000
EC상하체장	(정비)공장	철골조	961.88	1	100	80	125	510000	510,000	961.88	100	490,558,800
전동차결수차고	(정비)공장	철골조	1557.00	1	100	80	125	510000	510,000	1557.00	100	794,070,000
폐수처리장	(정비)공장	시멘트벽돌조	28.00	2	80	80	125	510000	408,000	28.00	100	11,424,000
화차출장선지붕	(정비)공장	철파이프조	273.60	1	80	80	125	510000	408,000	273.60	100	111,628,800
객차출장선지붕	(정비)공장	철파이프조	360.00	1	20	80	125	510000	102,000	360.00	100	36,720,000
객차압출감사장지붕	(정비)공장	철파이프조	628.95	1	80	80	125	510000	408,000	628.95	100	256,611,600
객차대차도정실지붕	(정비)공장	철골조	288.97	1	100	80	125	510000	510,000	288.97	100	147,374,700
화차수선조휴게실	(정비)공장	시멘트벽돌조	122.00	1	80	80	125	510000	408,000	122.00	100	49,776,000
화차수선조휴게실	(정비)공장	시멘트벽돌조	122.00	1	80	80	125	510000	408,000	122.00	100	49,776,000
장비분소본체	(정비)공장	철근콘크리트조	800.00	2	100	80	125	510000	510,000	800.00	100	408,000,000
구경기보선유류창고	(정비)공장	철근콘크리트조	128.00	2	100	80	125	510000	510,000	128.00	100	65,280,000

토지면적	89123.7
공시지가	7,350,000

구분	시가표준액
토지	655,059,195,000
건물	17,885,205,300
비율	0.0273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9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 ~ 라. 생략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6. 26. 대통령령 21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건축물의 범위 등)

② 제131조의2 및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9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가. 읍·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가. 법 제182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다. 삭제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31조의2제1항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④ 법 제182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란 제1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를 말한다.
⑤ 법 제182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5.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사업(제6호의 경우에는 철도역사 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철도용지

▣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0. 12. 23. 행정안전부령 제1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공장용 건축물의 정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9

영 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 및「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1. ~ 7. 생략

제74조(공장입지기준면적)

영 제132조제1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

[별표 4]

1. 공장입지기준면적 = 공장건축물 연면적 × (100 /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
2.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산출기준
 가. 생략
 나.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한다.
 다. 생략

▣ 구 공장입지기준고시(2008. 7. 4.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86호)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을 적용 받는 공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 한다. 다만, 건축법 및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등 다른 법령상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없거나 공장입지의 특성상 이 고시를 적용하면 공장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총설)

3. 표준산업분류 개요
 바. 통계단위의 산업결정
 1) 생산단위의 활동 형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9

생산단위의 산업활동은 일반적으로 주된 산업활동, 부차적 산업활동 및 보조적 활동이 결합되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주된 산업활동이란 산업활동이 복합 형태로 이루어질 경우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중에서 부가가치(액)가 가장 큰 활동을 말하며 부차적 산업활동은 주된 산업활동 이외의 재화생산 및 서비스제공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주된 활동과 부차 활동은 보조활동의 지원 없이는 수행될 수 없으며 보조 활동에는 회계, 창고, 운송, 구매, 판매촉진, 수리서비스업 등이 포함된다.

보조 활동은 모 생산단위에서 사용되는 비 내구재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생산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존재한다. 생산활동과 보조활동이 별개의 독립된 장소에서 이루어질 경우 지역 통계작성을 위하여 보조단위에 관한 정보를 별도로 수집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활동단위는 보조단위로 보아서는 안되며 별개의 활동으로 간주하여 그 자체활동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2) 산업결정방법

가) 생산단위의 산업 활동은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 활동(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주된 산업 활동은 산출물(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나, 부가가치(액)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출액에 의하여 결정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대분류)

H 운수업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각종 운송시설에 의한 여객 및 화물 운송업, 창고업 및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 운송업

노선 또는 정기 운송 여부를 불문하고 철도, 도로, 파이프라인, 해상 및 항공 등으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타산업과의 관계

나. 자동차의 유지 및 수리는 "95 : 수리업"에 분류되며, 철도터미널에서의 철도차량, 항구에서의 선박, 비행장에서의 비행기에 대한 일상적 유지 및 수리는 각각의 운송지원 서비스에 분류된다. 철도, 선박 및 비행기의 개량, 재생 및 개조활동은 "31 : 기타 운송장비제조업"에 분류된다. 끝.